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6 - 280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창문 블라인드)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창문 블라인드)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창문 블라인드 줄에 의한 어린이 질식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만9세 어린이를 기준으로 적용 장소를 구분하고, 만9세 이하에 대한 출입제한이 없는 곳에서 사용하는 블라인드에 대해서는 줄길이를 바닥에서 80 cm 이상으로 제한 등 안전요건을 강화 및 시험방법을 명확히 하여 안전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줄을 포함하는 창문 블라인드 제품에 대하여 만9세 어린이를 기준으로 적용 장소를 구분하고, 만9세 이하에 대한 출입제한이 없는 곳에서 사용하는 블라인드에 대해서는

① 줄길이를 바닥에서 80 cm 이상으로 제한하고,
② 6 kg의 하중이 적용되면 분리되거나,
③ 고정장치에 줄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 블라인드 동작을 제한하는 기능을 의무화 하거나,
④ 길이가 변화하는 줄에는 감아올려둘 수 있는 장치사용을 의무화 하는 요건과
⑤ 내측줄(차광막내에 사용하는 줄)에 대해서는 어린이의 머리가 끼지 않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

3. 신·구조문 대비표, 안전기준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12. 6.(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화/팩스 : 043-870-5454/043-870-5677

안전·품질표시기준 창문블라인드 부속서 35 개정(안)

안 전 · 품 질 표 시 기 준

창문블라인드(개정안) 부속서 35

(Internal Corded Window Blinds)

서문 2016년 6월 OECD가 창문블라인드 줄(cord)에 의한 어린이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 창문블라인드 안전 캠페인에 따르면 만9세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일반가정에서는 줄이 없는 창문블라인드 제품 사용을 최적의 안전요건으로 권장하고 있다. 다만 사정상 줄을 포함하는 창문 블라인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줄 길이를 제한한 제품이나, 해당국가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본 안전기준에서는 OECD 권고에 따라 줄을 포함하는 창문블라인드 제품에 대한 만9세이하의 어린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건을 규정하고자 한다.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차광(遮光)용, 실내장식용 등으로 이용되는 줄을 포함하는 실내용 창문 블라인드 제품이 가정, 호텔, 병원, 교회, 상업시설, 학교, 유아원, 유치원, 공공장소 등 만9세이하 어린이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사무실, 공장, 제한구역 등 만9세이하 어린이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설치되는 줄을 포함하는 창문블라인드 제품에는 이 기준의 **4. 안전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나, **6.표시사항**에 따른 표시사항과 경고라벨을 반드시 적용 하여야 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DIN EN 16433:2014 실내용 블라인드 - 질식사고 위험방지 - 시험방법 (Internal blinds - Protection from strangulation hazards - Test method)
BS EN 13120:2009+A1:2014 실내용 블라인드 - 안전성을 포함한 성능요건 (Internal blinds - Performance requirements including safety)
ANSI/WCMA A100.1-2014 줄이 있는 창문블라인드의 안전성에 대한 미국 국가 표준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safety of corded window covering products)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창문블라인드
차광용, 실내장식용 등으로 이용되는 유리창 또는 기타 건축물의 실내에 설치하는 줄을 포함하는 블라인드 제품(**[그림 1]** 참조)
3.2 차광막
창문 차광의 기능을 유지하고, 작동 체계에 의해 움직임이 정해져 있는 부분품(**[그림 1]** 참조).
햇빛량 및 투시도 등을 조절하는 용도의 섬유(면, 폴리에스테르 등), 알루미늄, 목재 등의 재질로 만든 것

3.3 당김줄(pull cord)

사용자에 의해 차광막의 올림/내림 또는 회전 할 수 있는 구동 시스템의 부분품(**[그림 1]** 참조).

주 1. 이 기준의 “당김줄”은 체인, 볼체인, 비드, 테이프, 유사물 등을 포함한다.

3.4 내측줄(inner cord)

차광막의 앞면, 옆면, 뒷면, 안쪽 등에 있을 수 있는 차광막 내측에서 구동하는 시스템의 부분품

3.5 작동루프(operating loop)

정상적인 동작시에 당김줄에 의해 형성된 길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루프(**[그림 1]** 참조)

3.6 위험루프(hazardous loop)

만9세이하 어린이가 접근 가능한 당김줄과 내측줄에 의해 만9세이하 어린이의 머리가 끼워 질수 있는 루프

3.7 머리끼임 확인 장치(head probe)

머리끼임 확인 시험을 위해 머리를 형상화한 것. 머리끼임 확인 장치는 **[그림 2]**와 같으며, 표면이 부드럽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주 2. 머리끼임 확인 장치는 **DIN EN 16433:2014, 4.**에 따른다.

3.8 테스트 실린더(test cylinder)

5. 시험방법에 따라 당김줄을 시험하기 위한 지름 60 mm의 지그로써, 어린이의 목 부위를 형상화 한 것(**[그림 6]** 참조).

3.9 누적장치(accumulation device)

길이가 변하는 당김줄을 갖는 창문블라인드에서 바닥으로부터 당김줄 최하단까지의 거리가 160 cm 이상으로 줄을 누적시킬 수 있는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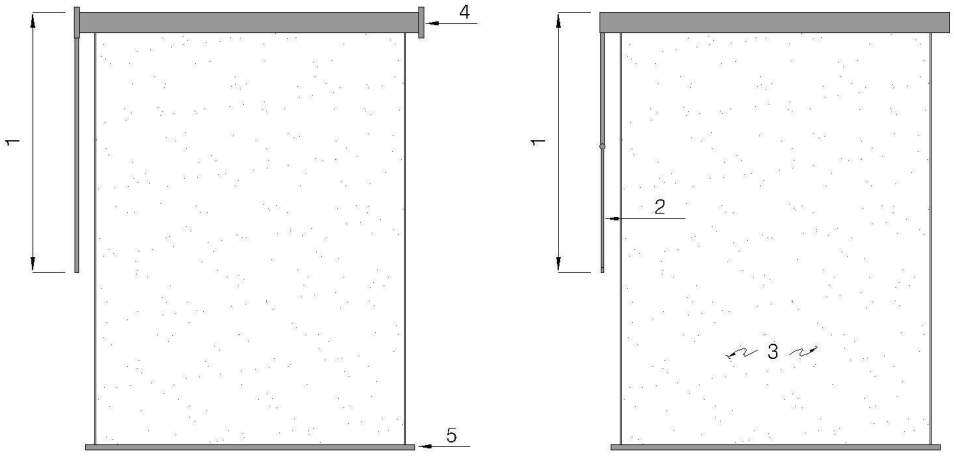

1 당김줄의 길이

2 당김줄

3 차광막

4 상단레일(head rail)

5 하단레일(bottom rail)

그림 1 창문블라인드 구성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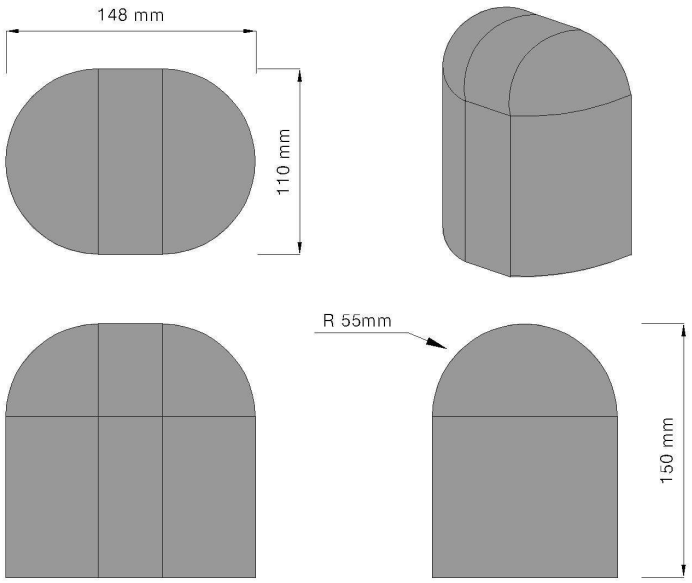

그림 2 머리끼임 확인 장치

4. 안전요건

당김줄이 있는 창문블라인드는 만9세이하 어린이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4.1 ~ 4.5**의 안전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적합하여야 하며, 접근 가능한 내측 줄이 있는 경우에는 **4.6**의 안전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당김줄은 **3.3**에 따르며, 당김줄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의 당김줄에 대하여 모두 적용한다.

4.1 분리 기능이 있는 당김줄 (breakaway system)

당김줄이 루프를 구성하며 일정 하중 이하에서 분리되는 기능을 갖는 당김줄로 구성된 창문블라인드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4.1.1 바닥으로부터 당김줄의 최하단까지의 높이(H_1)가 80 cm 보다 같거나 크도록 설치높이를 고려하여 당김줄의 길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그림 3]** 참조) : $H - L_1 \geq 80$ cm

주 3. 설치높이(H)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을 참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예, 반자높이 220 cm)

주 4. 이 기준에 적용되는 바닥으로부터 당김줄의 최하단까지의 높이(H_1)은 "소아재활의학 교과서(2판, 2013)"에 따른 잡고서기가 가능한 평균 성취 연령인 9개월과 "소아·청소년표준성장도표(2007. 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에 따라 8~9개월 남녀아의 95번째 백분위 신장에 의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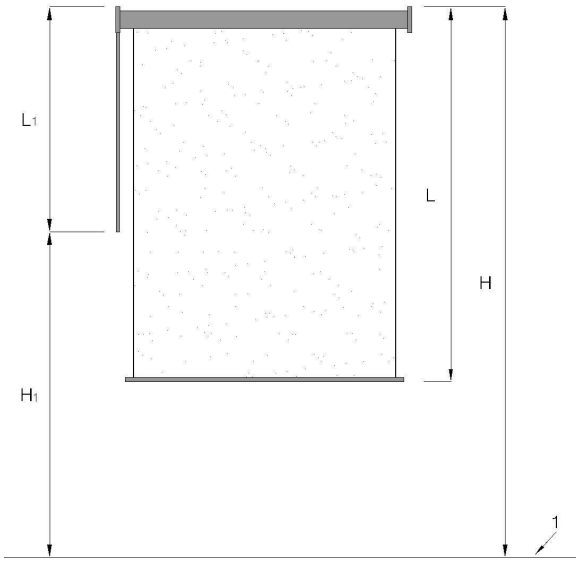

1 바닥면

그림 3 창문블라인드 각 부분의 길이 및 높이

4.1.2 위험루프는 6 kg의 부하하중이 점진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5초 이내에 제거되어야 한다.

주 5. 이 기준에 적용되는 부하하중은 "소아재활의학 교과서(2판, 2013)"에 따른 잡지 않아도 앉아 있기가 가능한 평균 성취 연령인 6개월과 "소아·청소년표준성장도표(2007. 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에 따라 5~6개월 남녀아의 5번째 백분위 체중에 의거한다.

주 6. 부하하중은 테스트 실린더의 질량을 포함하며, 테스트 실린더는 **3.8**에 따른다.

주 7. 점진적이란 당김줄에 어떠한 물리적 영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한다.

4.2 보호덮개로 덮힌 당김줄 (covering system)

당김줄이 루프를 구성하며 위험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당김줄의 일부 또는 전체를 덮는 보호장치가 있는 창문블라인드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4.2.1 바닥으로부터 당김줄의 최하단까지의 높이(H_1)가 80 cm 보다 같거나 크도록 설치높이를 고려하여 당김줄의 길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그림 3]** 참조) : $H - L_1 \geq 80$ cm

4.2.2 당김 줄과 줄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당김줄 전체를 덮는 일체형 보호장치 또는 부분적으로 덮는 분리형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보호장치는 만9세이하 어린이가 쉽게 분리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4.3 엉킴방지 기능이 있는 당김줄 (tangling system)

루프를 구성하지 않으며 길이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줄로 구성된 당김줄이거나, 루프가 아닌 길이가 변하지 않은 두 개 줄로 분리된 당김줄이 작동하는 창문블라인드와 루프형 당김줄의 일부분이 분리되어 재조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길이가 변하지 않는 두 개 줄로 분리된 당김줄로 작동이 가능한 창문블라인드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4.3.1 바닥으로부터 당김줄의 최하단까지의 높이(H_1)가 80 cm 보다 같거나 크도록 설치높이를 고려하여 당김줄의 길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그림 3]** 참조) : $H - L_1 \geq 80$ cm

4.3.1.1 엉킴방지 기능이 있는 당김줄을 적용한 제품은 창문블라인드를 작동하더라도 바닥으로부터의 줄의 높이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4.3.2 당김줄이 루프(loop)를 형성하지 않도록 줄이 하나이거나 두 개의 줄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엉킴방지 장치가 있는 경우 엉킴방지 장치의 길이는 80 cm 이상이어야 한다. 엉킴방지 장치가 없는 경우는 당김줄이 엉켜 위험 루프를 형성하지 않아야 한다.

4.4 고정하여 사용하는 당김줄 (tentioning system)

당김줄이 루프를 구성하며 위험루프가 구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높이에 당김줄이 고정될 수 있도록 구성된 창문블라인드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4.4.1 고정하여 사용하는 당김줄은 루프를 형성하는 당김줄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어장치로부터 외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하지 않으면 창문블라인드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일련의 장치를 두어야 한다.

4.4.2 바닥으로부터 당김줄의 최하단까지의 높이(H_1)가 160 cm 보다 같거나 크도록 설치높이를 고려하여 당김줄의 길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그림 3]** 참조) : $H - L_1 \geq 160$ cm

4.4.3 고정장치로부터 시작되는 루프를 형성하는 고정장치의 폭은 50 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그림 5]** 참조)

4.4.4 고정장치를 장착한 후 당김줄에 6 kg의 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고정장치의 어떠한 부분도 균열이나 파손이 있어서는 않되며, 고정하여 사용하는 당김줄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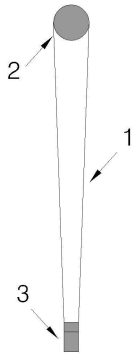

1 당김줄
2 제어장치
3 고정장치

그림 4 고정하여 사용하는 당김줄 구성 장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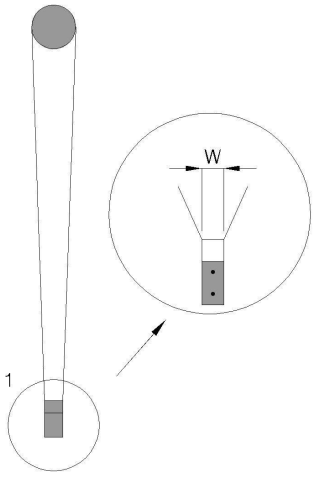

1 고정장치의 폭

그림 5 고정장치의 폭

4.5 길이가 변화하는 당김줄 (accumulation system)

창문블라인드 차광막을 올리고 내림에 따라 당김줄의 길이가 변화하는 창문블라인드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4.5.1 차광막이 완전히 내려온 위치에서, 바닥으로부터 당김줄의 최하단까지의 높이(H_1)가 160 cm 보다 같거나 크도록 설치높이를 고려하여 당김줄의 길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그림 3]** 참조) :

$H - L_1 \geq 160$ cm

4.5.2 길이가 변화하는 당김줄은 누적장치를 사용하여 차광막이 완전히 올라간 위치에서 바닥으로부터 160 cm 이상까지의 당김줄이 누적되어야 하며, "누적장치의 최하단이 바닥으로부터 160 c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누적장치 설치높이 및 설치방법을 **6.3**에 따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4.6 내측줄

내측줄이 있는 창문블라인드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4.6.1 내측줄에서 두 개의 연이은 부착점과 지지점 사이에 **3.7**에서 정의된 머리끼임 확인 장치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그림 11]** 참조)

4.6.2 내측줄에서 두 개의 연이은 부착점과 지지점 사이에 **3.7**에서 정의된 머리끼임 확인 장치가 들어가는 경우 **5.1.2**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시험방법

4. 안전요건의 시험을 위해서는 시험장치, 고정장치 등 설치물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조자가 제시한 설치방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5.1 분리 기능이 있는 당김줄 (breakaway system)

5.1.1 루프가 형성된 당김줄

분리 기능이 있는 당김줄 시험을 위해서는 **3.8**에서 정의된 테스트 실린더를 사용한다. 부하하중은 테스

트 실린더의 질량을 포함하며 **4.1.2**의 안전요건에 따라 시험한다.

5.1.1.1 당김줄의 길이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이때 당김줄 길이의 측정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설치한 후 외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블라인드의 최상부에서부터 당김줄의 최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

5.1.1.2 분리 기능이 있는 당김줄의 시험은 루프 내에서 분리장치의 위치가 변동 될수 있는 경우에는 루프의 최고점, 최저점 및 중간점 위치에서 각각 3회 시험한다.
단, 분리형식의 성능과 특정 부품(분리장치 등)의 위치등에 따라 상호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치와 상관없이 측정할 수 있다.

5.1.1.3 분리장치는 재조립 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위치에서도 분리 기능이 작동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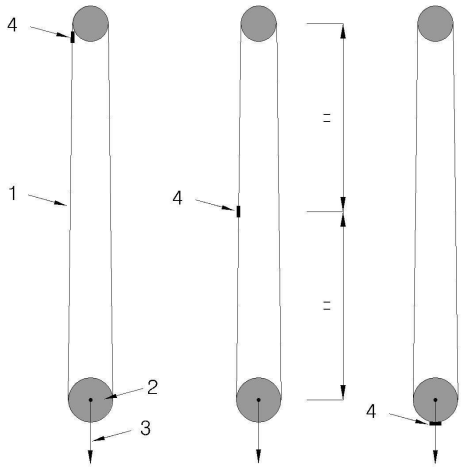

1 루프가 형성된 당김줄
2 테스트 실린더
3 부하하중
4 분리장치

그림 6 루프가 형성된 분리 기능이 있는 당김줄 시험방법 (예, 단일 분리장치 사용시)

5.1.2 위험 루프를 형성할 수 있는 분리 기능이 있는 내측줄

3.7에서 정의한 머리끼임 확인 장치가 들어가는 내측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광막이 완전히 펼쳐진 위치(**[그림 7]** 참조)에서 하단 첫 번째 루프 및 하단 두 번째 루프에 대하여 **5.1.1**에 따라 시험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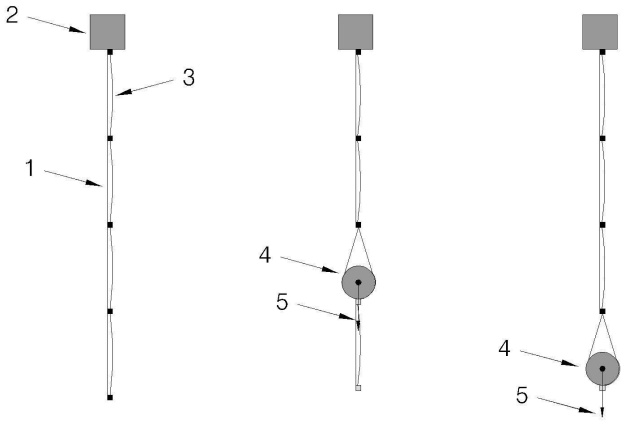

1 루프가 형성된 내측줄
2 헤드 레일
3 내측 작동줄

4 테스트 실린더
5 부하하중

그림 7 분리 기능이 있는 내측줄에 대한 시험방법 도시(예, 커튼과 함께 루프가 형성된 것)

5.2 보호덮개로 덮힌 당김줄 (covering system)

5.2.1 당김줄의 길이를 **5.1.1.1**에 따라 측정하고 기록한다.

5.2.2 줄과 줄 사이, 줄과 보호장치 사이, 보호장치와 보호장치 사이 등에 **3.7**의 머리끼임 확인 장치를 끼울 수 없어야 한다. 머리끼임 확인장치의 규격은 **[그림 2]**와 같으며, 표면이 부드럽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5.3 엄킴방지 기능이 있는 당김줄 (tangling system)

5.3.1 당김줄의 길이를 **5.1.1.1**에 따라 측정하고 기록한다.

5.3.2 길이가 변화하지 않는 창문블라인드의 당김줄이 루프를 형성하지 않도록 줄이 하나이거나 두 개의 줄로 분리되어야 하며, 80 cm 이상의 봉 또는 덮는 장치로 줄이 서로 엉키지 않도록 엉킴 방지 장치를 두어야 한다.(**[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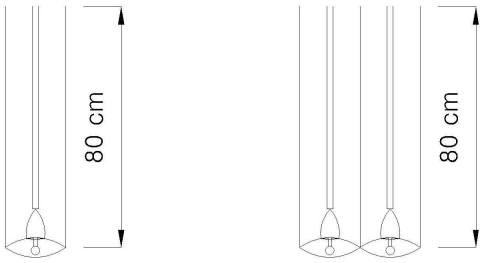

그림 8 엉킴 방지 장치 예시

5.3.3 당김줄이 2줄 이상 구성되어 있고 엉킴방지 장치가 없는 경우, **[그림 9]**와 같이 당김줄의 하단 200 mm에서 시작하여 하나의 당김줄을 다른 줄에 5회 감고 당김줄을 놓아서 풀림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당김줄이 풀리지 않으면 엉킨 부위에 **5.1.1**항에 따라 5회 반복 시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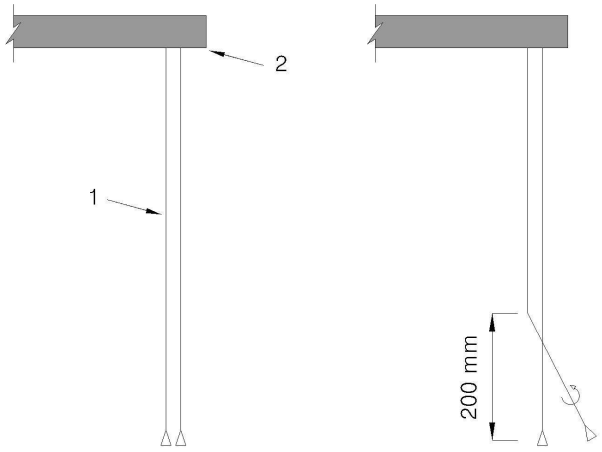

1 당김줄
2 상단레일

그림 9 엉킴방지 기능이 있는 당김줄의 시험방법

5.4 고정하여 사용하는 당김줄 (tentioning system)

5.4.1 당김줄의 길이를 **5.1.1.1**에 따라 측정하고 기록한다.

5.4.2 고정장치로부터 당김줄이 나오는 지점에서 루프를 형성하는 두개의 당김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그림 5]** 참조)

5.4.3 루프의 중간 위치 높이에서 점진적으로 하중을 적용하여 당김줄 평면에 수평력이 10초간 유지하도록 하며, 이때 적용되는 부하하중은 6 kg을 적용한다.(**[그림 10]** 참조)

5.4.4 당김줄 평면에 수직 방향으로 상기 시험을 반복 수행한다. **5.4.3**과 **5.4.4**의 시험을 수행한 후 고정장치는 분리, 균열 등 이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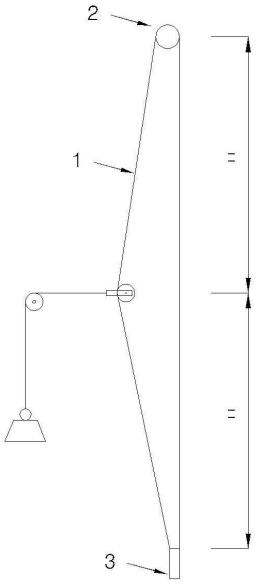

1 당김줄
2 제어장치
3 고정장치

그림 10 고정하여 사용하는 당김줄에 대한 시험방법

5.5 길이가 변화하는 당김줄 (accumulation system)

차광막을 올리고 내림에 따라 당김줄의 길이가 변화하는 창문블라인드에 적용한다.

5.5.1 차광막이 완전히 내려온 상태에서 당김줄의 길이를 **5.1.1.1**에 따라 측정하고 기록한다.

5.5.2 창문블라인드가 완전히 올라간 위치에서 바닥으로부터 160 cm 이상까지의 당김줄이 누적되는지 확인한다.

5.6 내측줄

내측줄이 있는 창문블라인드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5.6.1 내측줄에서 두 개의 연이은 부착점과 지지점 사이에 **3.7**에서 정의된 머리끼임 확인 장치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그림 11]** 참조)

5.6.2 내측줄에서 두 개의 연이은 부착점과 지지점 사이에 3.7에서 정의된 머리끼임 확인 장치가 들어가는 경우 5.1.2에 따라 시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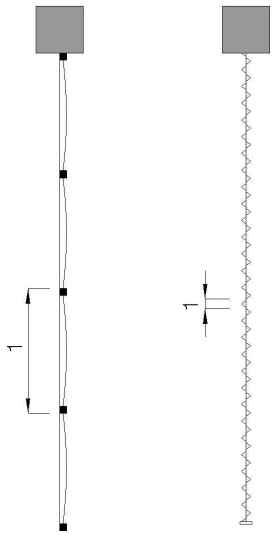

1 부착점과 지지점 사이

그림 11 부착점과 지지점 사이 (예, 로먼쉐이드와 플리티드 블라인드 류)

6. 표시사항

6.1 표시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6.1.1 만9세이하 어린이의 출입이 제한된 곳에 설치되는 창문블라인드의 표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1. 품　　명
2. 치　　수*(예 : 블라인드 크기 가로×세로×높이 cm)*
3. 설치장소*(예 : 만9세이하 어린이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용)*
4. 제조연월
5. 제조자명
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8. 제조국명
9. 사용설명서
10. 경고 라벨 및 태그
11. 사용상 주의사항

6.1.2 만9세이하 어린이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창문블라인드의 표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1. 품　　명
2. 치　　수*(예 : 블라인드 크기 가로×세로×높이 cm)*
3. 설치장소*(예 : 만9세이하 어린이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용)*
4. 적용 안전요건(당김줄 형식)*(예 : 분리 기능이 있는 당김줄 형식(내측줄 없음))*
5. 설치높이(H)*(예 : 설치높이(H) 220 cm)*
6. 당김줄 길이(L_1)*(예 : 80 cm, 길이가 변화하는 당김줄의 경우 최대길이 표시)*
7. 제조연월
8. 제조자명
9.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10.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11. 제조국명
12. 사용설명서
13. 경고 라벨 및 태그
14. 사용상 주의사항

6.2 만9세이하 어린이의 출입이 제한된 곳에 설치되는 창문블라인드의 경고 라벨

만9세이하 어린이의 출입이 제한된 곳에 설치되는 창문블라인드에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고" 문구를 세로 높이 8 mm 이상 크기로 표시하고 다음 예와 같은 경고 내용 문구를 세로 높이 3 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라벨에는 만9세이하 어린이의 목 주위에 당김줄이 감겨 있고 금지표시가 있는 그림문자가 있어야 한다.

6.2.1 경고 라벨은 만9세이하 어린이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3곳 이상의 위치에 다음 예와 같이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6.2.1.1 최종유통 단위포장 : 경고 라벨

6.2.1.2 창문블라인드의 하단레일 또는 동등의 위치 : 경고 라벨

6.2.1.3 당김줄 또는 동등의 위치 : 경고 라벨 또는 태그

⚠경고		이 제품의 당김줄은 만9세이하 어린이의 목을 감을 수 있으며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만9세이하 어린이의 질식사고를 예방할수 있는 기능이 없어 사무실, 공장, 제한구역 등 만9세이하 어린이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한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 또한 당김줄에 만9세이하 어린이가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 주십시오.

<경고라벨 예시>

⚠경고
이 제품의 당김줄은 만9세이하 어린이의 목을 감을 수 있으며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만9세이하 어린이의 질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사무실, 공장, 제한구역 등 만9세이하 어린이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한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 또한 당김줄에 만9세이하 어린이가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 주십시오.

<경고태그 예시>

6.3 만9세이하 어린이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창문블라인드의 경고 라벨 및 태그

이 기준에 적용하는 창문블라인드에는 만9세이하 어린이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3가지 이상의 위치에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최종유통 단위포장 : 경고 라벨 (6.3.1 참조)
- 창문블라인드의 하단레일 또는 동등의 위치 : 경고 라벨 (6.3.2 참조)
- 당김줄 또는 동등의 위치 : 제품 특성별 경고 라벨 또는 태그 (6.3.3 참조)

6.3.1 경고 라벨 – 최종 유통 단위 포장

최종 유통 단위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 라벨을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라벨에는 만9세이하 어린이 목주위의 당김줄 감김과 당김줄의 접근의 위험성에 대한 금지를 표시하는 2개의 그림문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경고 라벨은 제품 또는 최종 유통 단위 포장에 눈에 쉽게 띄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6.3.2.1 만9세이하 어린이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6.2와 같이 "⚠경고" 문구를 세로 높이 8 mm 이상 크기로 표시하고 경고 내용 문구를 세로 높이 3 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이 제품의 당김줄은 질식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만9세이하 어린이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당김줄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당김줄에 접근을 제한 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고라벨 예시>

6.3.2 경고 라벨 – 하단레일

만9세이하 어린이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고" 문구를 세로 높이 8 mm 이상 크기로 표시하고 다음 예와 같은 경고 내용 문구를 세로 높이 3 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라벨에는 만9세이하 어린이의 목 주위에 당김줄이 감겨 있고 금지표시가 있는 그림문자가 있어야 한다. 경고 라벨은 창문블라인드의 하단레일에 영구적으로 고정될 수 있도록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하단레일의 색과 대조적인 색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하단레일이 없는 창문블라인드에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단레일에 대응하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라벨은 다음 예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당김줄은 영유아의 목을 감을 수 있으며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항상 당김줄을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도록 유지하십시오. • 가구 등을 당김줄로부터 멀리 치우시기 바랍니다. 만9세이하 어린이가 가구 등을 기어올라 당김줄에 닿을 수 있습니다.

<경고라벨 예시>

6.3.3 제품 특성별 경고 라벨 또는 태그

제조자는 제품의 특성 또는 제품에 포함된 안전장치에 근거하여 제품 취급상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경고" 문구를 세로 높이 8 mm 이상 크기로 표시하고 경고 내용 문구를 세로 높이 3 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라벨 또는 태그에는 만9세이하 어린이의 목 주위에 당김줄이 감겨 있고 금지표시가 있는 그림문자가 있어야 한다. 제품 특성별 경고 라벨 또는 태그는 접근가능한 당김줄이 있는 모든 창문블라인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 특성별 경고 라벨 또는 태그는 6.3.3.1~6.3.3.5 중 하나 이상을 표시하여야 한다.

내측줄이 있는 제품의 경우 별도로 6.3.3.6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6.3.3.1 분리 기능이 포함된 당김줄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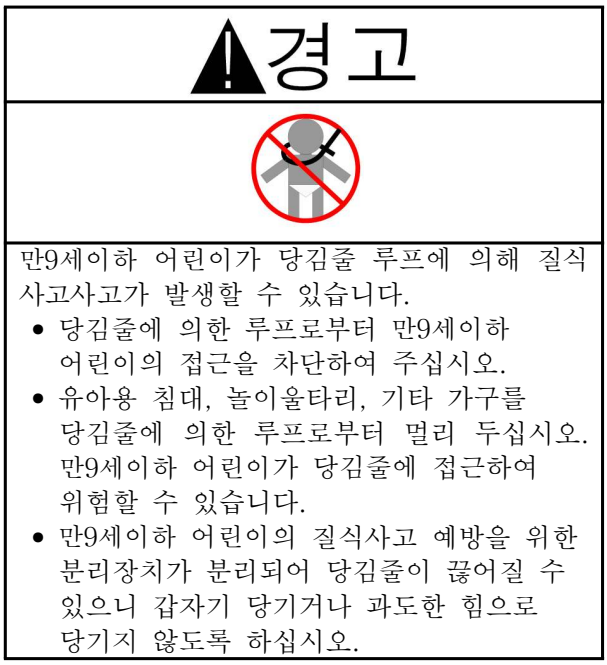

<경고태그 예시>

6.3.3.2 보호덮개로 덮힌 당김줄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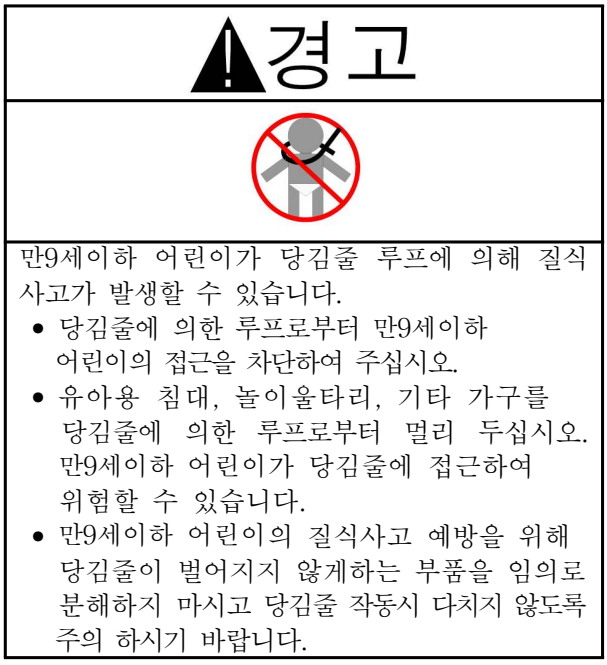

<경고태그 예시>

6.3.3.3 엉킴 방지 기능이 있는 당김줄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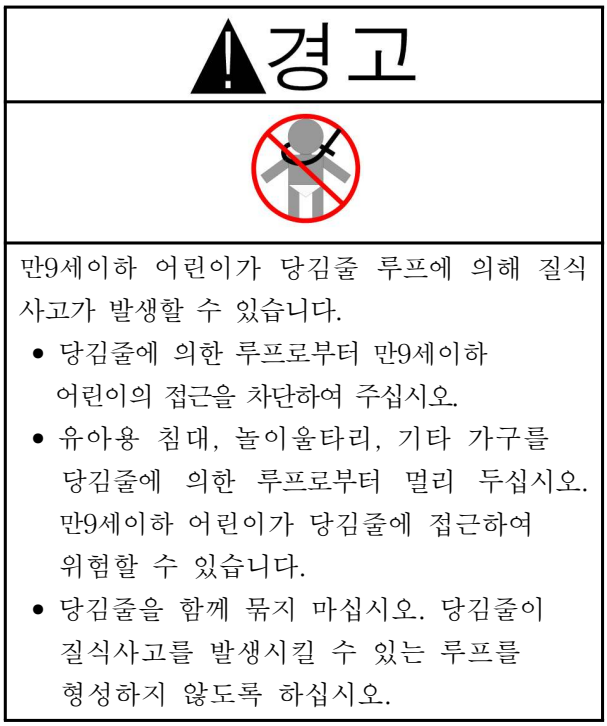

<경고태그 예시>

6.3.3.4 고정하여 사용하는 당김줄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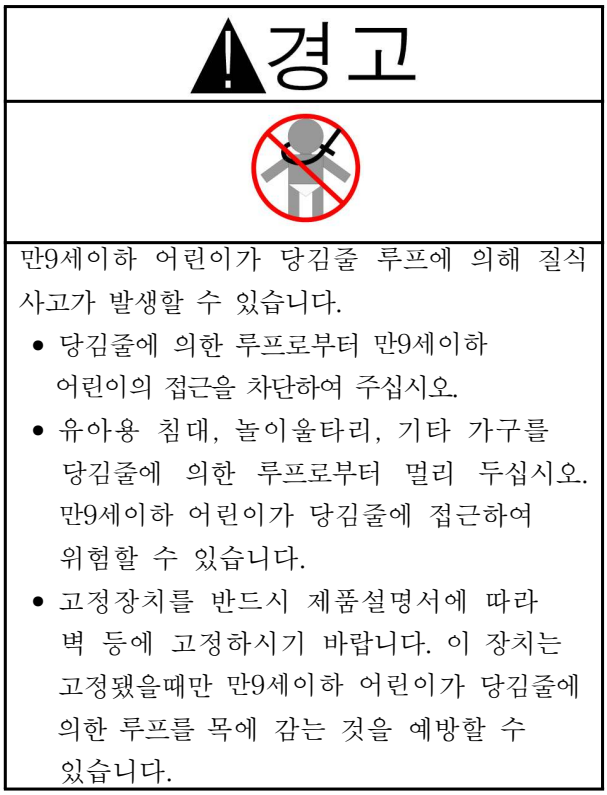

<경고태그 예시>

6.3.3.5 길이가 변화하는 당김줄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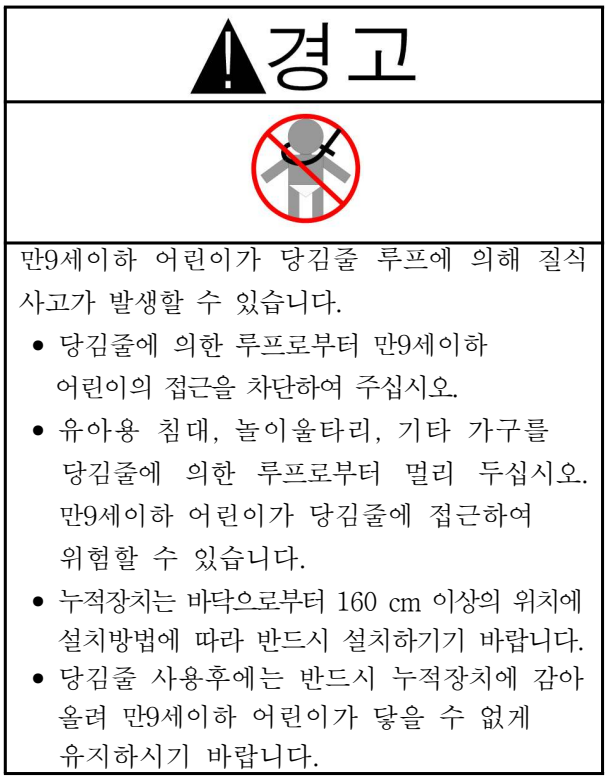

<경고태그 예시>

6.3.3.6 내측줄이 있는 경우

내측줄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예 또는 동등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경고 라벨 또는 태그를 접근가능한 내측줄의 최하단 부위에 부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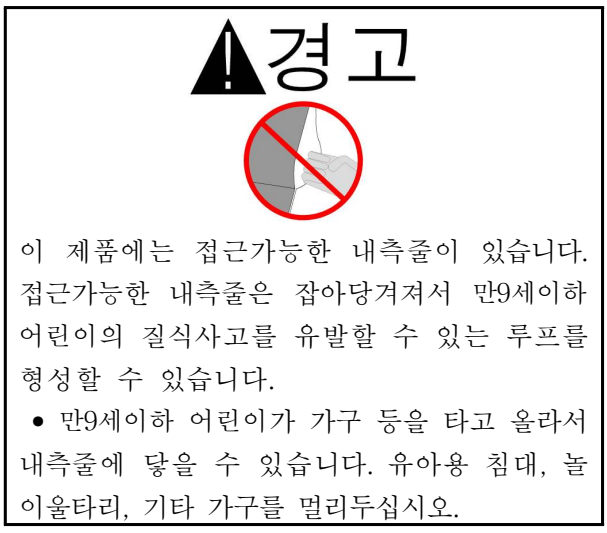

<경고태그 예시>

6.4 사용상 주의사항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6.4.1 제조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설치할 것

6.4.2 당김줄의 안전장치 및 부속품을 반드시 설치할 것

6.4.3 창문블라인드 제품 및 안전장치 등 부속품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분해하여 사용하지 말 것

6.4.4 사용중 주기적으로 창문블라인드 제품 및 안전장치 등 부속품의 정상작동 상태를 확인할 것

6.4.5 사용중 분실, 고장, 파손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수리하도록 할 것

6.4.6 당김줄은 어린이의 목 주위를 조를 수 있으니 항상 당김줄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할 것

6.4.7 당김줄 근처에 가구나 기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어린이가 당김줄에 닿을 수 있으니 주의할 것

6.4.8 분리장치가 분리되어 당김줄이 끊어질 수 있으니 갑자기 당기거나 과도한 힘으로 당기지 말 것

6.4.9 당김줄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부품을 임으로 분해하지 말고 당김줄 작동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할 것

6.4.10 하나의 당김줄을 꼬이게 하거나 두 개로 분리된 당김줄을 함께 묶지 말 것

6.4.11 고정장치를 사용설명서에 따라 반드시 고정 할 것

6.4.12 누적장치는 바닥으로부터 160 cm 이상의 위치에 제조사 사용설명서의 설치방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 할 것

6.4.13 당김줄 사용후에는 반드시 누적장치에 감아 올려 놓을 것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176호(2012.04.25)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0000-0000호(20XX.XX.XX)

창문블라인드 신·구조문 대비표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현 행)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개 정(안)
	서 문 2016년 6월 OECD가 창문블라인드 줄(cord)에 의한 어린이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 창문블라인드 안전 캠페인에 따르면 만9세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일반가정에서는 줄이 없는 창문블라인드 제품 사용을 최적의 안전요건으로 권장하고 있다. 다만 사정상 줄을 포함하는 창문 블라인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줄 길이를 제한한 제품이나, 해당국가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본 안전기준에서는 OECD 권고에 따라 줄을 포함하는 창문블라인드 제품에 대한 만9세이하의 어린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건을 규정하고자 한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차광(遮光)용, 실내장식용 등으로 이용되는 로만쉐이드, 수직-수평블라인드, 롤업블라인드 및 기타 창문 블라인드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차광(遮光)용, 실내장식용 등으로 이용되는 줄을 포함하는 실내용 창문 블라인드 제품이 가정, 호텔, 병원, 교회, 상업시설, 학교, 유아원, 유치원, 공공장소 등 만9세이하 어린이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사무실, 공장, 제한구역 등 만9세이하 어린이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설치되는 줄을 포함하는 창문블라인드 제품에는 이 기준의 **4. 안전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나, **6.표시사항**에 따른 표시사항과 경고라벨을 반드시 적용 하여야 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DIN EN 16433:2014 실내용 블라인드 - 질식사고 위험방지 - 시험방법 (Internal blinds - Protection from strangulation hazards - Test method) BS EN 13120:2009+A1:2014 실내용 블라인드 - 안전성을 포함한 성능요건 (Internal blinds - Performance requirements including safety) ANSI/WCMA A100.1-2014 줄이 있는 창문블라인드의 안전성에 대한 미국 국가 표준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safety of corded window covering products)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현 행)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개 정(안)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블라인드 줄(cord)"은 원단의 형상유지 또는 원단의 위치를 상·하·좌·우 조정하거나 햇빛량 및 투시도 등을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2 "투시도 조절면"은 햇빛량 및 투시도 등을 조절하는 용도의 섬유(면, 폴리에스테르 등), 알루미늄, 목재 등의 재질로 만든 것을 말한다.~~ ~~2.3 "연결고리(tassel)"는 블라인드 줄이 하나의 일체형 루프(loop)를 형성하기 위해 줄과 줄 사이를 연결해주는 부품을 말한다.~~ ~~2.4 "조절장치"는 샤프트 또는 롤러 튜브에 연결되어 블라인드 줄을 지탱하며 블라인드 줄이 작동하도록 하는 부품을 말한다.~~ ~~2.5 "샤프트(shaft) 또는 롤러 튜브(roller tube)"는 투시도 조절면을 말아올리거나 내리는 데 사용하는 원통형 등의 부품을 말한다.~~ ~~2.6 "엔드캡(endcap)"은 샤프트(롤러튜브)와 결합되어 클러치를 고정시키는 부품을 말한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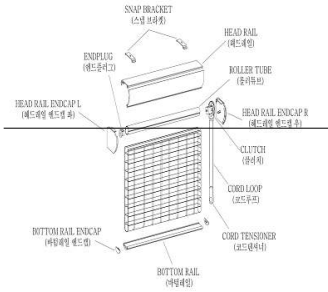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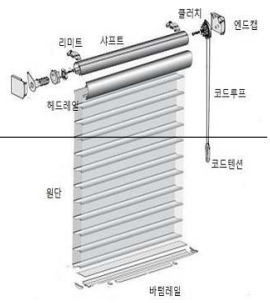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창문블라인드** 차광용, 실내장식용 등으로 이용되는 유리창 또는 기타 건축물의 실내에 설치하는 줄을 포함하는 블라인드 제품(**[그림 1]** 참조) **3.2 차광막** 창문 차광의 기능을 유지하고, 작동 체계에 의해 움직임이 정해져 있는 부분품(**[그림 1]** 참조). 햇빛량 및 투시도 등을 조절하는 용도의 섬유(면, 폴리에스테르 등), 알루미늄, 목재 등의 재질로 만든 것 **3.3 당김줄(pull cord)** 사용자에 의해 차광막의 올림/내림 또는 회전 할 수 있는 구동 시스템의 부분품(**[그림 1]** 참조). **주 1.** 이 기준의 "당김줄"은 체인, 볼체인, 비드, 테이프, 유사물 등을 포함한다. **3.4 내측줄(inner cord)** 차광막의 앞면, 옆면, 뒷면, 안쪽 등에 있을 수 있는 차광막 내측에서 구동하는 시스템의 부분품 **3.5 작동루프(operating loop)** 정상적인 동작시에 당김줄에 의해 형성된 길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루프(**[그림 1]** 참조) **3.6 위험루프(hazardous loop)** 만9세이하 어린이가 접근 가능한 당김줄과 내측줄에 의해 만9세이하 어린이의 머리가 끼워 질수 있는 루프 **3.7 머리끼임 확인 장치(head probe)** 머리끼임 확인 시험을 위해 머리를 형상화한 것. 머리끼임 확인 장치는 **[그림 2]**와 같으며, 표면이 부드럽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주 2.** 머리끼임 확인 장치는 DIN EN 16433:2014, 4.에 따른다. **3.8 테스트 실린더(test cylinder)** **5. 시험방법**에 따라 당김줄을 시험하기 위한 지름 60 mm의 지그로써, 어린이의 목 부위를 형상화한 것(**[그림 6]** 참조) **3.9 누적장치(accumulation device)**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현 행)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개 정(안)
	길이가 변하는 당김줄을 갖는 창문블라인드에서 바닥으로부터 당김줄 최하단까지의 거리가 160 cm 이상으로 줄을 누적시킬 수 있는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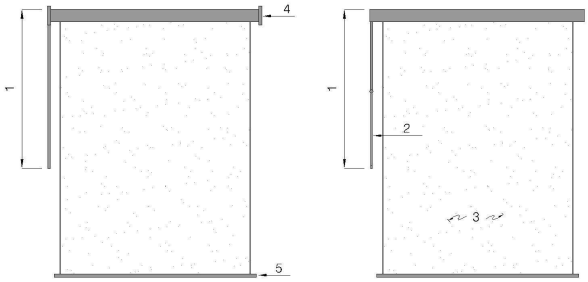
	1 당김줄의 길이 2 당김줄 3 차광막 4 상단레일(head rail) 5 하단레일(bottom rail)
	그림 1 창문블라인드 구성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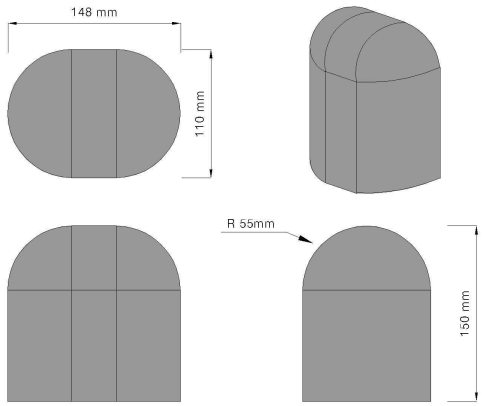
	그림 2 머리끼임 확인 장치
3. 안전요건 **3.1 일반요건** 창문 블라인드는 ~~아동 및 유아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줄이 없는 전자동식, 수동식 제품을 권장하며, 블라인드 줄이 있는 제품의 경우 디자인, 무게, 치수와 설치장소 등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안전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블라인드 줄을 벽면에 밀착하여 고정시키거나 부착하기 힘든 경우 3.1.1, 3.1.2 및 3.1.3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안전요건** 당김줄이 있는 창문블라인드는 만9세이하 어린이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4.1 ~ 4.5**의 안전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적합하여야 하며, 접근 가능한 내측 줄이 있는 경우에는 **4.6**의 안전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당김줄은 **3.3**에 따르며, 당김줄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의 당김줄에 대하여 모두 적용한다.
~~**3.1.1** 창문 블라인드가 U자형 루프(loop)를 형성되는 줄(이하 "U자형 줄"이라 한다)이 있는 제품의 경우 <그림. 3>과 같이 하중을 수직 하방향으로~~	**4.1 분리 기능이 있는 당김줄 (breakaway system)**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현 행)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개 정(안)
~~250 mm/min의 인장속도로 재하하였을 때 다음 <표>의 (가), (나) 및 (다)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된 연결고리, 클러치, 샤프트 등은 재조립하였을 때 원래 기능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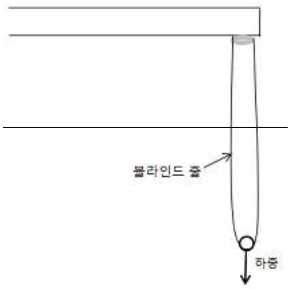 ~~<표>~~ ~~재하하중 | 안전요건 | 비고~~ ~~98 N이상 | (가) 샤프트, 엔드캡과 클러치가 분리되어 블라인드 줄의 탈착~~ ~~(나) 클러치로부터 블라인드 줄의 분리~~ ~~(다) 연결고리 부품의 분리(연결고리가 있는경우)~~	당김줄이 루프를 구성하며 일정 하중 이하에서 분리되는 기능을 갖는 당김줄로 구성된 창문블라인드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4.1.1** 바닥으로부터 당김줄의 최하단까지의 높이(H_1)가 80 cm 보다 같거나 크도록 설치높이를 고려하여 당김줄의 길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그림 3]** 참조) : $H - L_1 \geq 80$ cm **주 3.** 설치높이(H)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을 참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예, 반자높이 220 cm) **주 4.** 이 기준에 적용되는 바닥으로부터 당김줄의 최하단까지의 높이(H_1)은 "소아재활의학 교과서(2판, 2013)"에 따른 잡고서기가 가능한 평균 성취 연령인 9개월과 "소아·청소년표준성장도표(2007. 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에 따라 8~9개월 남녀아의 95번째 백분위 신장에 의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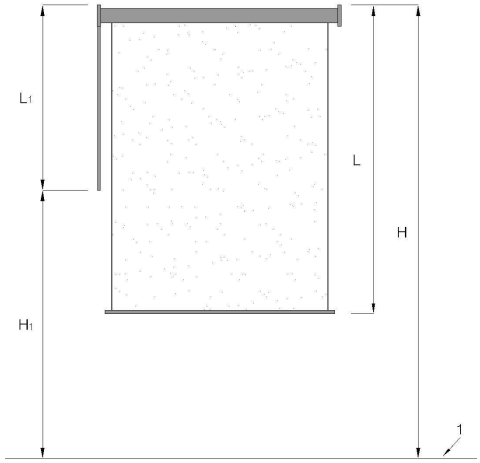 1 바닥면 **그림 3** 창문블라인드 각 부분의 길이 및 높이 **4.1.2** 위험루프는 6 kg의 부하하중이 점진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5초 이내에 제거되어야 한다. **주 5.** 이 기준에 적용되는 부하하중은 "소아재활의학 교과서(2판, 2013)"에 따른 잡지 않아도 앉아 있기가 가능한 평균 성취 연령인 6개월과 "소아·청소년표준성장도표(2007. 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에 따라 5~6개월 남녀아의 5번째 백분위 체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현 행)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개 정(안)
	중에 의거한다. **주 6.** 부하하중은 테스트 실린더의 질량을 포함하며, 테스트 실린더는 **3.8**에 따른다. **주 7.** 점진적이란 당김줄에 어떠한 물리적 영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한다.
	4.2 보호덮개로 덮힌 당김줄 (covering system) 당김줄이 루프를 구성하며 위험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당김줄의 일부 또는 전체를 덮는 보호장치가 있는 창문블라인드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4.2.1 바닥으로부터 당김줄의 최하단까지의 높이(H_1)가 80 cm 보다 같거나 크도록 설치높이를 고려하여 당김줄의 길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그림 3]** 참조) : $H - L_1 \geq 80$ cm
3.1.2 ~~U자형 줄이 있는 제품의 경우 블라인드~~ 줄과 줄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블라인드~~ 줄 전체를 덮는 일체형 보호장치 또는 부분적으로 덮는 분리형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 동 보호장치는 유아 및 아동이 쉽게 분리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유아 및 아동이 줄을 당기는 등의 조작을 하였을 때도 줄 자체, 줄과 보호장치 사이, 보호장치와 보호장치 사이 등에 머리를 끼울 수 없어야 한다.~~	**4.2.2** 당김 줄과 줄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당김줄 전체를 덮는 일체형 보호장치 또는 부분적으로 덮는 분리형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보호장치는 만9세이하 어린이가 쉽게 분리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4.3 엉킴방지 기능이 있는 당김줄 (tangling system) 루프를 구성하지 않으며 길이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줄로 구성된 당김줄이거나, 루프가 아닌 길이가 변하지 않은 두 개 줄로 분리된 당김줄이 작동하는 창문블라인드와 루프형 당김줄의 일부분이 분리되어 재조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길이가 변하지 않는 두 개 줄로 분리된 당김줄로 작동이 가능한 창문블라인드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4.3.1 바닥으로부터 당김줄의 최하단까지의 높이(H_1)가 80 cm 보다 같거나 크도록 설치높이를 고려하여 당김줄의 길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그림**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현 행)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개 정(안)
	3] 참조) : H - L_1 ≥ 80 cm
	4.3.1.1 엉킴방지 기능이 있는 당김줄을 적용한 제품은 창문블라인드를 작동하더라도 바닥으로부터의 줄의 높이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3.1.3 블라인드 줄이 루프(loop)를 형성하지 않도록 줄이 하나이거나 두 개의 줄로 분리되어야 하며, ~~60 cm 이상의 봉 또는 덮는 장치로 줄이 서로 엉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그림.4, 그림.5)~~	4.3.2 당김줄이 루프(loop)를 형성하지 않도록 줄이 하나이거나 두 개의 줄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엉킴방지 장치가 있는 경우 엉킴방지 장치의 길이는 80 cm 이상이어야 한다. 엉킴방지 장치가 없는 경우는 당김줄이 엉켜 위험 루프를 형성하지 않아야 한다.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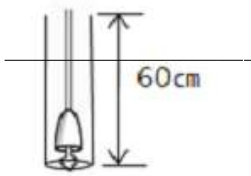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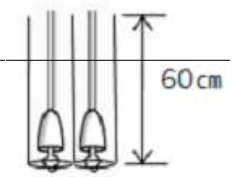	
~~3.1.4 블라인드 줄의 하단부분(클러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부분)을 벽에 밀착하여 유아 및 아동이 당겼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키거나 부착될 수 있어야 하며, 설치되었을 때 줄과 벽간의 간격은 10 cm이내이어야 한다. (참고 그림.6)~~	4.4 고정하여 사용하는 당김줄 (tentioning system) 당김줄이 루프를 구성하며 위험루프가 구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높이에 당김줄이 고정될 수 있도록 구성된 창문블라인드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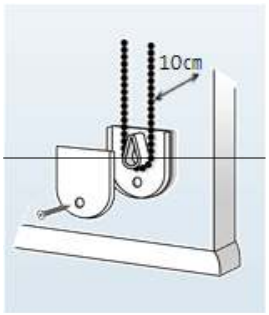	4.4.1 고정하여 사용하는 당김줄은 루프를 형성하는 당김줄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어장치로부터 외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하지 않으면 창문블라인드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일련의 장치를 두어야 한다.
	4.4.2 바닥으로부터 당김줄의 최하단까지의 높이(H_1)가 160 cm 보다 같거나 크도록 설치높이를 고려하여 당김줄의 길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그림 3] 참조) : H - L_1 ≥ 160 cm
	4.4.3 고정장치로부터 시작되는 루프를 형성하는 고정장치의 폭은 50 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그림 5] 참조)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현 행)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개 정(안)
	4.4.4 고정장치를 장착한 후 당김줄에 6 kg의 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고정장치의 어떠한 부분도 균열이나 파손이 있어서는 않되며, 고정하여 사용하는 당김줄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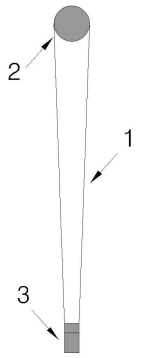 1 당김줄 2 제어장치 3 고정장치 **그림 4** 고정하여 사용하는 당김줄 구성 장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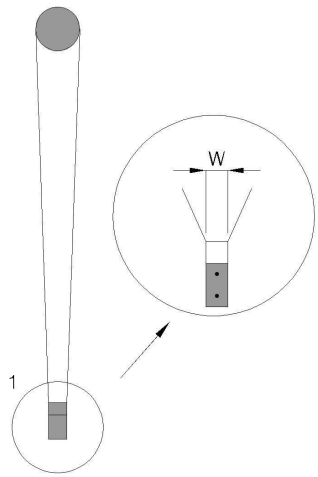 1 고정장치의 폭 **그림 5** 고정장치의 폭 **4.5 길이가 변화하는 당김줄 (accumulation system)** 창문블라인드 차광막을 올리고 내림에 따라 당김줄의 길이가 변화하는 창문블라인드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현 행)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개 정(안)
	4.5.1 차광막이 완전히 내려온 위치에서, 바닥으로부터 당김줄의 최하단까지의 높이(H_1)가 160 cm 보다 같거나 크도록 설치높이를 고려하여 당김줄의 길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그림 3] 참조) : $H - L_1 \geq 160$ cm 4.5.2 길이가 변화하는 당김줄은 누적장치를 사용하여 차광막이 완전히 올라간 위치에서 바닥으로부터 160 cm 이상까지의 당김줄이 누적되어야 하며, "누적장치의 최하단이 바닥으로부터 160 c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누적장치 설치높이 및 설치방법을 6.3에 따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4.6 내측줄 내측줄이 있는 창문블라인드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4.6.1 내측줄에서 두 개의 연이은 부착점과 지지점 사이에 3.7에서 정의된 머리끼임 확인 장치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그림 11] 참조) 4.6.2 내측줄에서 두 개의 연이은 부착점과 지지점 사이에 3.7에서 정의된 머리끼임 확인 장치가 들어가는 경우 5.1.2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시험방법 4. 안전요건의 시험을 위해서는 시험장치, 고정장치 등 설치물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조자가 제시한 설치방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5.1 분리 기능이 있는 당김줄 (breakaway system) 5.1.1 루프가 형성된 당김줄 분리 기능이 있는 당김줄 시험을 위해서는 3.8에서 정의된 테스트 실린더를 사용한다. 부하하중은 테스트 실린더의 질량을 포함하며 4.1.2의 안전요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현 행)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개 정(안)
	건에 따라 시험한다. **5.1.1.1** 당김줄의 길이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이때 당김줄 길이의 측정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설치한 후 외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블라인드의 최상부에서부터 당김줄의 최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 **5.1.1.2** 분리 기능이 있는 당김줄의 시험은 루프 내에서 분리장치의 위치가 변동 될수 있는 경우에는 루프의 최고점, 최저점 및 중간점 위치에서 각각 3회 시험한다. 단, 분리형식의 성능과 특정 부품(분리장치 등)의 위치등에 따라 상호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치와 상관없이 측정할 수 있다. **5.1.1.3** 분리장치는 재조립 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위치에서도 분리 기능이 작동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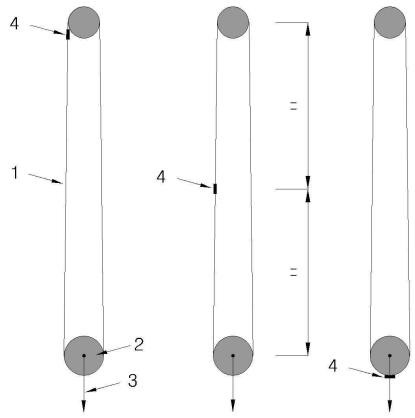 1 루프가 형성된 당김줄 2 테스트 실린더 3 부하하중 4 분리장치 **그림 6** 루프가 형성된 분리 기능이 있는 당김줄 시험방법 (예, 단일 분리장치 사용시) **5.1.2 위험 루프를 형성할 수 있는 분리 기능이 있는 내측줄** **3.7**에서 정의한 머리끼임 확인 장치가 들어가는 내측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광막이 완전히 펼쳐진 위치(**[그림 7]** 참조)에서 하단 첫 번째 루프 및 하단 두 번째 루프에 대하여 **5.1.1**에 따라 시험을 수행한다.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현 행)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개 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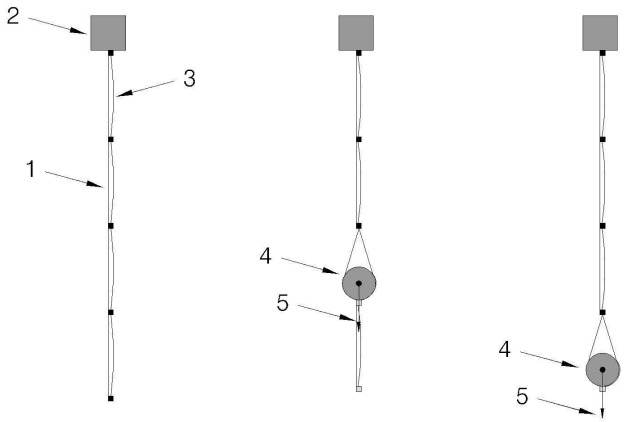

1 루프가 형성된 내측줄
2 헤드 레일
3 내측 작동줄
4 테스트 실린더
5 부하하중

그림 7 분리 기능이 있는 내측줄에 대한 시험방법 도시(예, 커튼과 함께 루프가 형성된 것)

5.2 보호덮개로 덮힌 당김줄 (covering system)

5.2.1 당김줄의 길이를 **5.1.1.1**에 따라 측정하고 기록한다.

5.2.2 줄과 줄 사이, 줄과 보호장치 사이, 보호장치와 보호장치 사이 등에 **3.7**의 머리끼임 확인 장치를 끼울 수 없어야 한다. 머리끼임 확인장치의 규격은 **[그림 2]**와 같으며, 표면이 부드럽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5.3 엉킴방지 기능이 있는 당김줄 (tangling system)

5.3.1 당김줄의 길이를 **5.1.1.1**에 따라 측정하고 기록한다.

5.3.2 길이가 변화하지 않는 창문블라인드의 당김줄이 루프를 형성하지 않도록 줄이 하나이거나 두 개의 줄로 분리되어야 하며, 80 cm 이상의 봉 또는 덮는 장치로 줄이 서로 엉키지 않도록 엉킴방지 장치를 두어야 한다.(**[그림 8]** 참조)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현 행)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개 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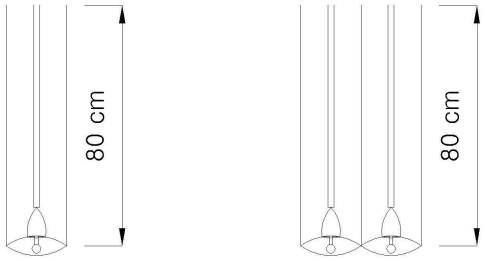

그림 8 엉킴 방지 장치 예시

5.3.3 당김줄이 2줄 이상 구성되어 있고 엉킴방지 장치가 없는 경우, **[그림 9]**와 같이 당김줄의 하단 200 mm에서 시작하여 하나의 당김줄을 다른 줄에 5회 감고 당김줄을 놓아서 풀림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당김줄이 풀리지 않으면 엉킨 부위에 **5.1.1**항에 따라 5회 반복 시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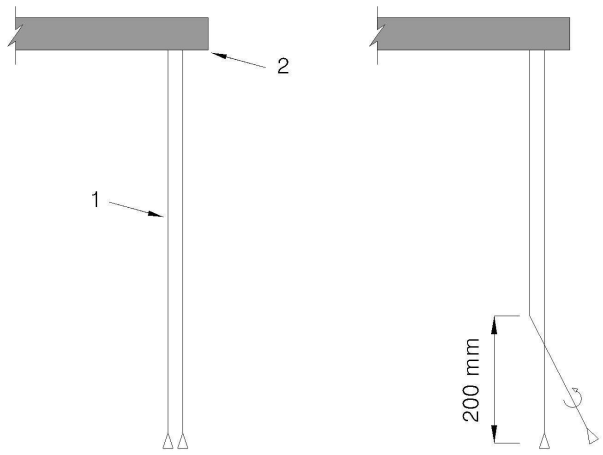

1 당김줄
2 상단레일

그림 9 엉킴방지 기능이 있는 당김줄의 시험방법

5.4 고정하여 사용하는 당김줄 (tentioning system)

5.4.1 당김줄의 길이를 **5.1.1.1**에 따라 측정하고 기록한다.

5.4.2 고정장치로부터 당김줄이 나오는 지점에서 루프를 형성하는 두개의 당김줄 사이의 거리를 측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현 행)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개 정(안)
	정한다.(**[그림 5]** 참조) **5.4.3** 루프의 중간 위치 높이에서 점진적으로 하중을 적용하여 당김줄 평면에 수평력이 10초간 유지하도록 하며, 이때 적용되는 부하하중은 6 kg을 적용한다.(**[그림 10]** 참조) **5.4.4** 당김줄 평면에 수직 방향으로 상기 시험을 반복 수행한다. **5.4.3**과 **5.4.4**의 시험을 수행한 후 고정장치는 분리, 균열 등 이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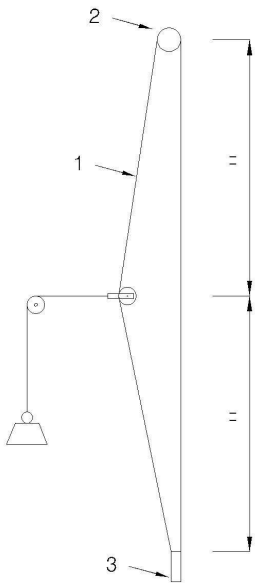 1 당김줄 2 제어장치 3 고정장치 **그림 10** 고정하여 사용하는 당김줄에 대한 시험방법 **5.5 길이가 변화하는 당김줄 (accumulation system)** 차광막을 올리고 내림에 따라 당김줄의 길이가 변화하는 창문블라인드에 적용한다. **5.5.1** 차광막이 완전히 내려온 상태에서 당김줄의 길이를 **5.1.1.1**에 따라 측정하고 기록한다. **5.5.2** 창문블라인드가 완전히 올라간 위치에서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현 행)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개 정(안)
	바닥으로부터 160 cm 이상까지의 당김줄이 누적되는지 확인한다. **5.6 내측줄** 내측줄이 있는 창문블라인드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5.6.1** 내측줄에서 두 개의 연이은 부착점과 지지점 사이에 **3.7**에서 정의된 머리끼임 확인 장치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그림 11]** 참조) **5.6.2** 내측줄에서 두 개의 연이은 부착점과 지지점 사이에 **3.7**에서 정의된 머리끼임 확인 장치가 들어가는 경우 **5.1.2**에 따라 시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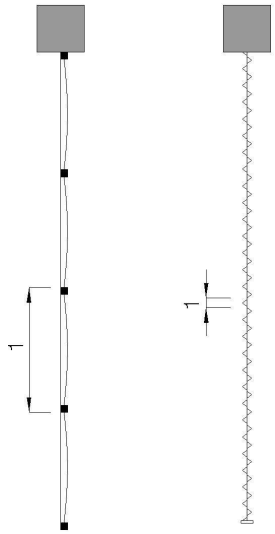 1 부착점과 지지점 사이 **그림 11** 부착점과 지지점 사이 (예, 로먼쉐이드와 플리티드 블라인드 류)
4. 표시사항 ~~제품에는 다음의 형식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조의 방법으로 판매자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6. 표시사항** **6.1 표시**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6.1.1 만9세이하 어린이의 출입이 제한된 곳에 설치되는 창문블라인드의 표시**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현 행)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개 정(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1. 품 명 2. 치 수 ~~3. 재 질~~ 4. 제조연월 6. 제조자명 7.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8.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9. 제조국명 10. 사용상 주의사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1. 품 명 2. 치 수*(예 : 블라인드 크기 가로×세로×높이 cm)* 3. 설치장소*(예 : 만9세이하 어린이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용)* 4. 제조연월 5. 제조자명 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8. 제조국명 9. 사용설명서 10. 경고 라벨 및 태그 11. 사용상 주의사항
	6.1.2 만9세이하 어린이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창문블라인드의 표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1. 품 명 2. 치 수*(예 : 블라인드 크기 가로×세로×높이 cm)* 3. 설치장소*(예 : 만9세이하 어린이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용)* 4. 적용 안전요건(당김줄 형식)*(예 : 분리기능이 있는 당김줄 형식(내측줄 없음))* 5. 설치높이(H)*(예 : 설치높이(H) 240 cm)* 6. 당김줄 길이(L_1)*(예 : 80 cm, 길이가 변화하는 당김줄의 경우 최대길이 표시)* 7. 제조연월 8. 제조자명 9.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10.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11. 제조국명 12. 사용설명서 13. 경고 라벨 및 태그 14. 사용상 주의사항
	6.2 만9세이하 어린이의 출입이 제한된 곳에 설치되는 창문블라인드의 경고 라벨 만9세이하 어린이의 출입이 제한된 곳에 설치되는 창문블라인드에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고" 문구를 세로 높이 8 mm 이상 크기로 표시하고 다음 예와 같은 경고 내용 문구를 세로 높이 3 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라벨에는 만9세이하 어린이의 목 주위에 당김줄이 감겨 있고 금지표시가 있는 그림문자가 있어야 한다.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현 행)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개 정(안)
	6.2.1 경고 라벨은 만9세이하 어린이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3곳 이상의 위치에 다음 예와 같이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6.2.1.1 최종유통 단위포장 : 경고 라벨 6.2.1.2 창문블라인드의 하단레일 또는 동등의 위치 : 경고 라벨 6.2.1.3 당김줄 또는 동등의 위치 : 경고 라벨 또는 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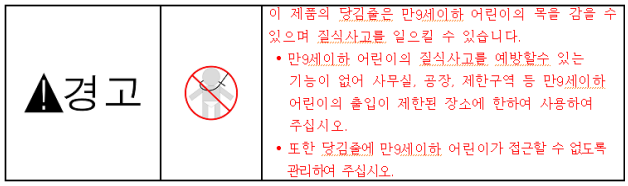 <경고라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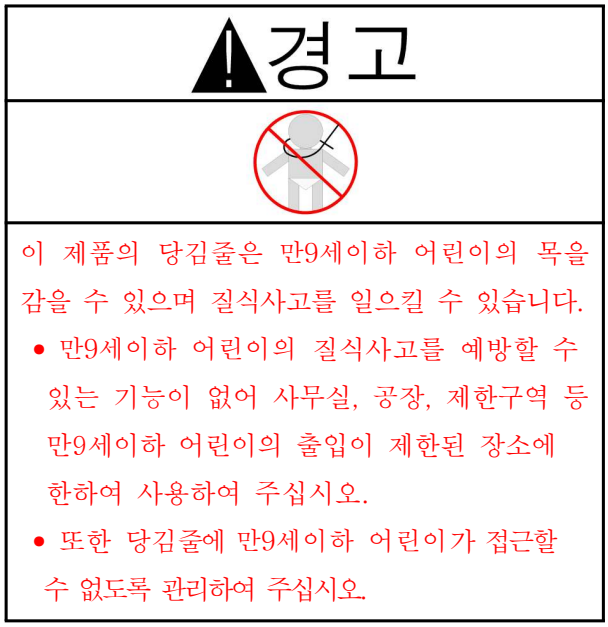 <경고태그 예시> **6.3 만9세이하 어린이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창문블라인드의 경고 라벨 및 태그** 이 기준에 적용하는 창문블라인드에는 만9세이하 어린이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3가지 이상의 위치에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최종유통 단위포장 : 경고 라벨 (6.3.1 참조) - 창문블라인드의 하단레일 또는 동등의 위치 : 경고 라벨 (6.3.2 참조) - 당김줄 또는 동등의 위치 : 제품 특성별 경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현 행)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개 정(안)

고 라벨 또는 태그 (6.3.3 참조)

6.3.1 경고 라벨 – 최종 유통 단위 포장

최종 유통 단위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 라벨을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라벨에는 만9세이하 어린이 목주위의 당김줄 감김과 당김줄의 접근의 위험성에 대한 금지를 표시하는 2개의 그림문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경고 라벨은 제품 또는 최종 유통 단위 포장에 눈에 쉽게 띄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6.3.2.1 만9세이하 어린이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6.2와 같이 "⚠경고" 문구를 세로 높이 8 mm 이상 크기로 표시하고 경고 내용 문구를 세로 높이 3 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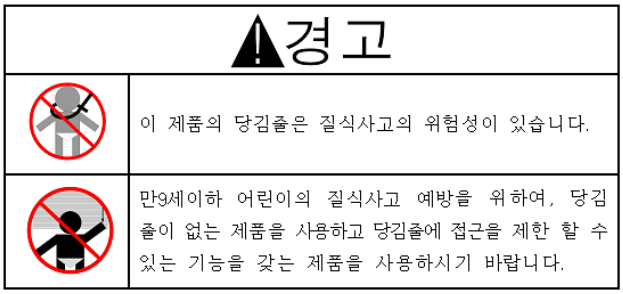

<경고라벨 예시>

6.3.2 경고 라벨 – 하단레일

만9세이하 어린이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고" 문구를 세로 높이 8 mm 이상 크기로 표시하고 다음 예와 같은 경고 내용 문구를 세로 높이 3 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라벨에는 만9세이하 어린이의 목 주위에 당김줄이 감겨 있고 금지표시가 있는 그림문자가 있어야 한다. 경고 라벨은 창문블라인드의 하단레일에 영구적으로 고정될 수 있도록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하단레일의 색과 대조적인 색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하단레일이 없는 창문블라인드에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단레일에 대응하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라벨은 다음 예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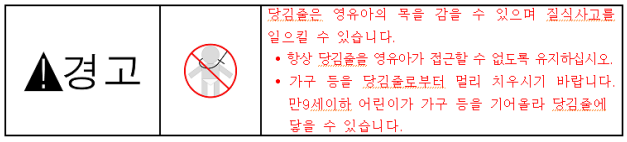

<경고라벨 예시>

6.3.3 제품 특성별 경고 라벨 또는 태그

제조자는 제품의 특성 또는 제품에 포함된 안전장치에 근거하여 제품 취급상 경고 표시를 하여야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현 행)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개 정(안)
	한다. "⚠경고" 문구를 세로 높이 8 mm 이상 크기로 표시하고 경고 내용 문구를 세로 높이 3 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라벨 또는 태그에는 만9세이하 어린이의 목 주위에 당김줄이 감겨 있고 금지표시가 있는 그림문자가 있어야 한다. 제품 특성별 경고 라벨 또는 태그는 접근가능한 당김줄이 있는 모든 창문블라인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 특성별 경고 라벨 또는 태그는 6.3.3.1~6.3.3.5 중 하나 이상을 표시하여야 한다. 내측줄이 있는 제품의 경우 별도로 6.3.3.6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6.3.3.1 분리 기능이 포함된 당김줄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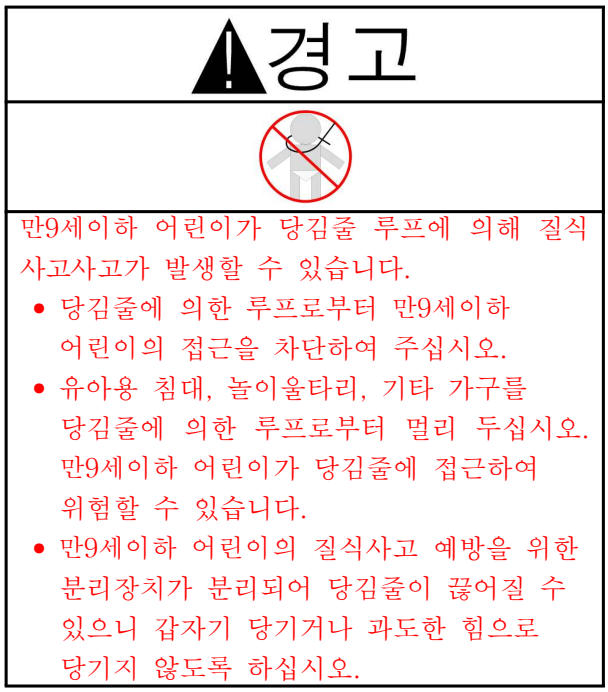 <경고태그 예시> 6.3.3.2 보호덮개로 덮힌 당김줄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현 행)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개 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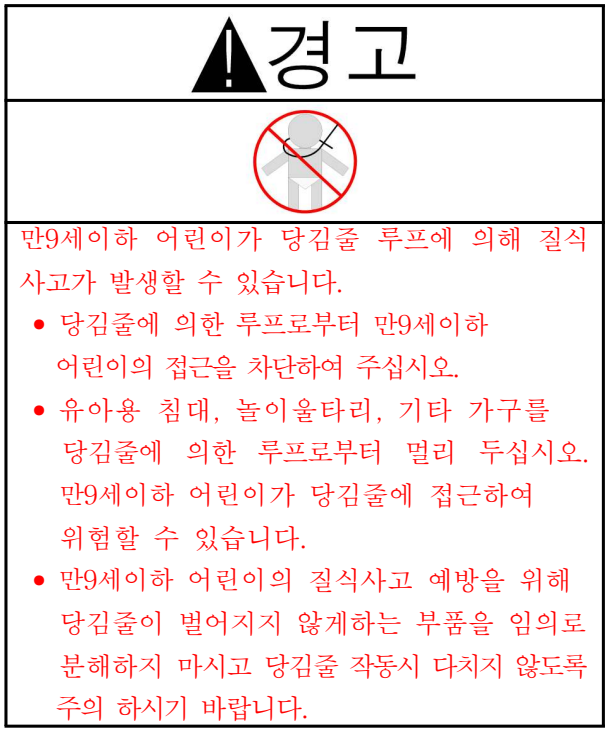 <경고태그 예시> 6.3.3.3 엉킴 방지 기능이 있는 당김줄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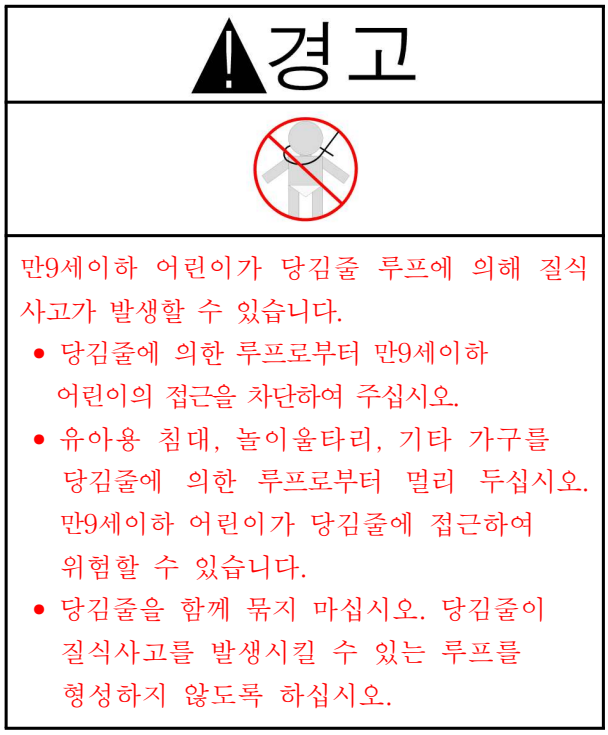 <경고태그 예시> 6.3.3.4 고정하여 사용하는 당김줄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현 행)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개 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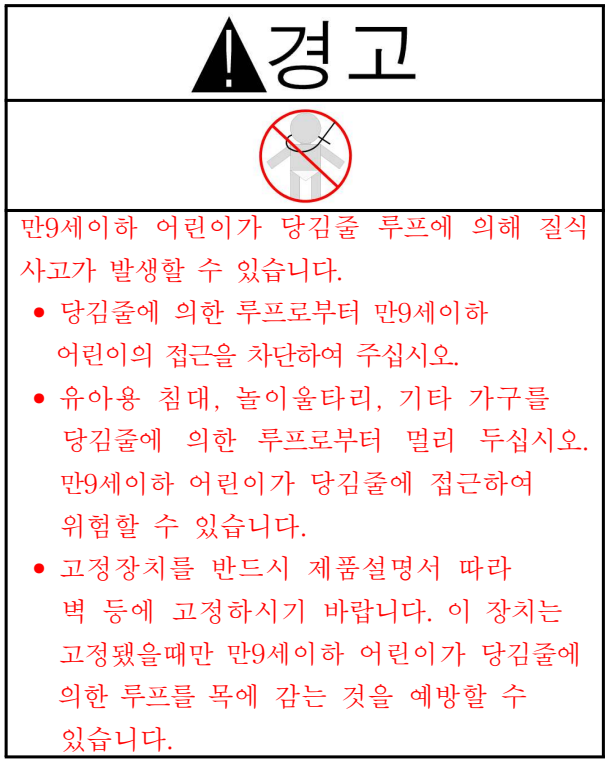 <경고태그 예시> 6.3.3.5 길이가 변화하는 당김줄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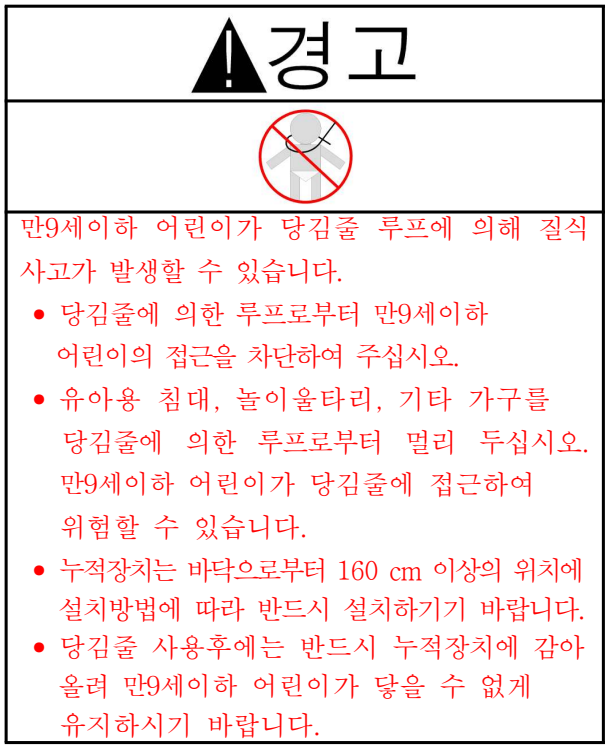 <경고태그 예시> 6.3.3.6 내측줄이 있는 경우 내측줄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예 또는 동등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경고 라벨 또는 태그를 접근가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현 행)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개 정(안)
	능한 내측줄의 최하단 부위에 부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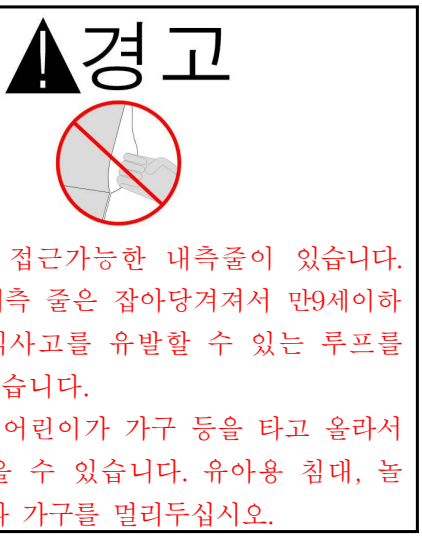 이 제품에는 접근가능한 내측줄이 있습니다. 접근가능한 내측 줄은 잡아당겨져서 만9세이하 어린이의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루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 만9세이하 어린이가 가구 등을 타고 올라서 내측줄에 닿을 수 있습니다. 유아용 침대, 놀이울타리, 기타 가구를 멀리두십시오.
	<경고태그 예시>
4.1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용어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6.4 사용상 주의사항**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 경고 : 화기에 가까이 할 경우 불길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6.4.1** 제조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설치할 것
·“⚠ 주의 : 줄(코드)과 비드체인은 아이의 목 주위를 조를 수 있으니 항상 줄(코드)과 비드체인을 아이의 손에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6.4.2** 당김줄의 안전장치 및 부속품을 반드시 설치할 것
·“⚠ 주의 : 줄(코드)과 비드체인 근처에 가구나 기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아이들이 블라인드 줄에 닿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3** 창문블라인드 제품 및 안전장치 등 부속품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분해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주의 : 블라인드 줄로 인한 유아 및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 kg이상의 하중에서 연결고리 등이 분리되거나 블라인드줄이 끊어질 수 있으니 갑자기 당기거나 과도한 힘으로 당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안전요구사항 3.1.1에 해당되는 제품인 경우)	**6.4.4** 사용중 주기적으로 창문블라인드 제품 및 안전장치 등 부속품의 정상작동 상태를 확인할 것
·“⚠ 주의 : 블라인드 줄로 인한 유아 및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블라인드 줄이 벌어지지 않는 부품을 임의로 분해하지마시고 줄 작동시 다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요구사항 3.1.2에 해당되는 제품인 경우)	**6.4.5** 사용중 분실, 고장, 파손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수리하도록 할 것
·“⚠ 주의 : 블라인드 줄로 인한 유아 및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블라인드 줄을 고정시키는 부품을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요구사항 3.1.4에 해당되는 제품인 경우)	**6.4.6** 당김줄은 어린이의 목 주위를 조를 수 있으니 항상 당김줄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할 것
·“⚠ 주의 : 블라인드를 설치할 경우 유아 및 아동	**6.4.7** 당김줄 근처에 가구나 기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어린이가 당김줄에 닿을 수 있으니 주의할 것
	6.4.8 분리장치가 분리되어 당김줄이 끊어질 수 있으니 갑자기 당기거나 과도한 힘으로 당기지 말 것
	6.4.9 당김줄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부품을 임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현 행)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35 창문블라인드 개 정(안)
~~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줄의 하단이 바닥으로부터 160 c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 주십시오.”~~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176호 (2012.04.25)	으로 분해하지 말고 당김줄 작동시 다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6.4.10 하나의 당김줄을 꼬이게 하거나 두 개로 분리된 당김줄을 함께 묶지 말 것 6.4.11 고정장치를 사용설명서에 따라 반드시 고정 할 것 6.4.12 누적장치는 바닥으로부터 160 cm 이상의 위치에 제조사 사용설명서의 설치방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 할 것 6.4.13 당김줄 사용후에는 반드시 누적장치에 감아 올려 놓을 것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176호 (2012.04.25)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0000-0000호(20XX.XX.XX)